

토양오염도검사

개요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산업시설 등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및 명의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받는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예방 조치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

구 분	대 상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주유소, 판매소 및 산업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 제외))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산업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등록 및 허가받은 자)
송유관시설	송유관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검사 종류

구 분	대 상	검사주기
정기검사	저장시설 설치후 정기적으로 실시함	완공검사일(또는 영업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
수시검사	시설의 종료, 폐쇄, 양도, 임대, 토양의 교체, 저장물질 종류 변경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토양오염물질 누출되는 경우	지체없이 실시

검사주기

구 분	시험항목
일반지역	1) 최초 설치후 6월이내 → 5년 → 10년 → 15년 2) 15년이상 시설 : 2년 1회
특수지역	매년 1회 ※다만, 가목 또는 라목의 지역 (나목 또는 다목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다음 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	

업무흐름도



면제의견서

구분	면제사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면제의견서 작성)	1.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된 경우
	2.탱크 바닥면이 상시 육안으로 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저장시설이 1년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송유관안전시설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1.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6월이 경과하기 전 2.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3.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경우



면제의견서 작성 업무흐름도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필증 1부
- 완공검사필증 1부
- 건물 단면도 각 1부
- 탱크실 평면도 각 1부
- 유류탱크 측면도 각 1부

※ 면제받은 시설이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정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KEWI

KEWI